

먹는물水質基準및檢査등에관한規則

제정 1995. 5. 1 환경부령 제11호

第1條 目 的

第2條 水質基準 및 檢査方法

第3條 水質檢査 申請

第4條 水質檢査 횟수

第5條 健康診斷

第6條 水質檢査結果의 報告

第7條 水質檢査成績書등의 保存

附 則

먹는물水質基準및檢査등에관한規則

제정 1995. 5. 1 환경부령 제11호

第1條(目的)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제26조와 수도법 제18조·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·검사방법 및 검사횟수와 관련종사자의 건강진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第2條(水質基準 및 檢査方法) ①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(수돗물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의 검사방법은 별표 2와 같다.

第3條(水質檢査 申請) ①먹는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먹는물수질검사서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第4條(水質檢査 횟수) ①수도법 제19조 제1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자 및 전용상수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1.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

가. 정수장에서의 검사

1) 별표 1중 냄새·맛·색도·탁도·수소이온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: 매일 1회이상

2) 별표 1중 일반세균·대장균군·암모니아성질소·질산성질소·과

망간산칼륨소비량 및 증발잔류물
에 관한 검사: 매주 1회이상

3) 별표 1의 전항목 검사: 매월 1회
이상

나. 수도전에서의 검사

별표 1중 일반세균·대장균군 및 잔
류염소에 관한 검사: 매월 1회이상

2. 간이상수도 및 전용상수도의 경우

별표 1중 냄새·맛·색도·탁도·일반
세균·대장균군·암모니아성질소 및
질산성질소에 관한 검사: 매분기 1회
이상

②먹는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
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특별시장·
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
사”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
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1. 별표 1의 전항목 검사(염소소독을 실
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트리할로메
탄 검사를 제외한다): 매년 1회이상

2. 별표 1중 일반세균·대장균군·암모
니아성질소·질산성질소·과망간산칼
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
: 매분기 1회이상

③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
사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추출되는
수도전에 대하여 한다.

④일반수도사업자: 전용상수도사업자 또
는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·도지
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질검사의외
특정물질등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가 우
려되는 경우에는 그 물질에 대한 수질검
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
다.

第5條(健康診斷) ①먹는물관리법 제26조

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샘물제조업자 및
그 종업원과 수도법 제20조에 규정한 자
는 장티프스·파라티프스 및 세균성이질
병원체의 감염여부에 관하여 다음 각호
의 구분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.
다만, 소화기계통 전염병이 먹는샘물제조
공장 또는 수도의 취수장·배수지 부근
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
에는 발생된 전염병 또는 발생할 우려가
있는 전염병에 관하여 즉시 건강진단을
받아야 한다.

1. 먹는샘물의 취수·제조·가공·저장·
이송시설에 종사하는 자 및 수도법 제
20조에 규정한 자: 매 6월마다 1회

2.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제조업
에 종사하는 제1호외의 종업원: 환경
부장관이 전염병의 예방등을 위하여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관할
보건소 또는 위생분야종사자들의건강진
단규칙에 의하여 시·도지사가 지정하는
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.

③먹는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
의한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
류는 제1항의 질병으로 한다.

第6條(水質檢查結果의 報告) ①일반수도
사업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
매월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전에서의 수
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
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·도지사에게
보고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이를 취
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
보고하여야 한다.

②간이상수도 및 전용상수도사업자는 제
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

여 매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분기 종료후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시·도지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분기마다 실시한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第7條(水質檢査成績書 등의 保存) ①일반 수도사업자·전용상수도사업자 또는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·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②먹는물생물제조업자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건강진단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의 제3호중 카목 내지 거목의 검사기준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먹는물의 수질기준(제2조제1항관련)

1. 미생물에 관한 기준

가. 일반세균(표준한천 배지내에서 성장하여 집락을 형성할 수 있는 중온성균을 말한다)은 1ml중 100CFU(Colony Forming Unit)를 넘지 아니할 것

나. 대장균군(젖당을 분해하여 산과 가스를 발생하는 그람음성, 무포아성 간균으로 호기성 또는 통성혐기성균을 말

- 한다)은 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
- 2.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
 - 가. 납은 0.05mg/l를 넘지 아니할 것
 - 나. 불소는 1mg/l를 넘지 아니할 것
 - 다. 비소는 0.05mg/l를 넘지 아니할 것
 - 라. 세레늄은 0.01mg/l를 넘지 아니할 것
 - 마. 수은은 검출되지 아니할 것
 - 바. 시안은 검출되지 아니할 것
 - 사. 6가크롬은 0.05mg/l를 넘지 아니할 것
 - 아. 암모니아성질소는 0.05mg/l를 넘지 아니할 것
 - 자. 질사성질소는 10mg/l를 넘지 아니할 것
 - 차. 카드뮴은 0.01mg/l를 넘지 아니할 것
- 3.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관련 기준
 - 가. 페놀은 0.005mg/l를 넘지 아니할 것
 - 나. 총 트리할로메탄은 0.1mg/l를 넘지 아니할 것
 - 다. 다이아지논은 0.02mg/l를 넘지 아니할 것
 - 라. 파라티온은 0.06mg/l를 넘지 아니할 것
 - 마. 말라티온은 0.25mg/l를 넘지 아니할 것
 - 바. 페니트로티온 0.04mg/l를 넘지 아니할 것
 - 사. 카바릴은 0.07mg/l를 넘지 아니할 것
 - 아. 1.1.1-트리클로로에탄은 0.01mg/l를 넘지 아니할 것
 - 자.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.01mg/l를 넘지 아니할 것
 - 차.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.03mg/l를 넘지 아니할 것
 - 카. 디클로로메탄은 0.03mg/l를 넘지 아니할 것
 - 타. 벤젠은 0.01mg/l를 넘지 아니할 것
 - 파. 톨루엔은 0.7mg/l를 넘지 아니할 것

- 하. 에틸벤젠은 0.3mg/ℓ를 넘지 아니할 것
 거. 크실렌은 0.5mg/ℓ를 넘지 아니할 것
4.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
 가. 경도는 300mg/ℓ를 넘지 아니할 것
 나.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10mg/ℓ를 넘지 아니할 것
 다.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
 라. 동은 1mg/ℓ를 넘지 아니할 것
 마.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
 바. 세제(음이온계면활성제)는 0.5mg/ℓ를 넘지 아니할 것
 사. 수소이온농도는 pH 5.8 내지 8.5mg/ℓ를 넘지 아니할 것
 아. 아연은 1mg/ℓ를 넘지 아니할 것
 자. 염소이온은 150mg/ℓ를 넘지 아니할 것
 차. 증발잔류물은 500mg/ℓ를 넘지 아니할 것
 카. 철 및 망간은 각각 0.3mg/ℓ를 넘지 아니할 것
 타. 탁도는 2도를 넘지 아니할 것
 파. 황산이온은 200mg/ℓ를 넘지 아니할 것
 하. 알루미늄은 0.2mg/ℓ를 넘지 아니할 것

[별표 2]

먹는물의 수질검사방법(제2조관련)

제 1 장 시험방법

1. 일반세균
2. 대장균군
3. 납
4. 불소
5. 비소
6. 세레늄
7. 수은

8. 시안
9. 6가크롬
10. 암모니아성질소
11. 질산성질소
12. 카드뮴
13. 총트리할로메탄, 테트라클로로에틸렌, 트리클로로에틸렌, 1,1,1-트리클로로에탄
14. 다이아지논, 파라티온, 밀라티온, 페니트로티온
15. 카바틸
16. 휘발성 유기화합물질
17. 경도
18. 과망간산칼륨소비량
19. 냄새
20. 맛
21. 동
22. 색도
23. 세제(음이온계면활성제)
24. 수소이온 농도
25. 아연
26. 염소이온
27. 증발잔류물
28. 잔류염소
29. 철
30. 망간
31. 탁도
32. 황산이온
33. 알루미늄
34. 기타

제 2 장 시약의 등급

제 3 장 시험 및 판정시의 유의사항

제 4 장 시료의 채취 및 보존

※ 세부항목 생략

[별표 3]

수도전의 검체추출기준

급수인구(명)	검 체 수
5,000미만	1
5,000이상- 50,000미만	급수인구 5,000명당 1
5,000이상- 100,000미만	급수인구 6,000명당 1
100,000이상- 500,000미만	급수인구 8,000명당 1
500,000이상-1,000,000미만	급수인구 10,000명당 1
1,000,000이상-2,000,000미만	급수인구 15,000명당 1
2,000,000이상-4,000,000미만	급수인구 20,000명당 1
4,000,000이상	급수인구 25,000명당 1

◇ 제정이유 ◇

먹는물관리법이 제정(1995. 1. 5. 법률 제4908호)됨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 · 검사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◇ 주요골자 ◇

- 가. 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을 정함(제2조).
- 나. 일반수도 · 전용상수도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횟수를 정함(제4조).
- 다. 일반수도 · 전용상수도 및 먹는샘물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는 매 6월마다 1회 이상 장티프스등 수인성전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함(제5조).
- 라. 수질검사성적서는 5년간, 건강진단서는 3년간 보존하도록 함(제7조).

<환경부 제공>

환경보전 국민생활 수칙

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 하였습니다. 그러나 오늘날 산업의 발달과 도시화로 인하여 이 강산은 날로 오염되고 우리의 생활환경마저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.

우리 삶의 보금자리인 이 터전이 온갖 공해로부터 병들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손만대까지 건강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함께 다음 사항을 지켜 나갑시다.

- ☞ 물과 전기를 아껴쓰는 습관을 생활화합시다.
- ☞ 합성세제와 1회용 생활용품은 되도록 적게 사용합시다.
- ☞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 버리고,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잘 골라 자원 활용에 보탬시다.
- ☞ 음식찌꺼기는 물기를 짜낸 후 버리고, 쓰고 남은 식용유는 휴지에 묻혀 버립시다.
- ☞ 고무, 비닐 등 독한 냄새를 내는 물질을 함부로 태우지 맙시다.
- ☞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.
- ☞ 이웃에 피해를 주는 소음을 내지 않도록 합시다.
- ☞ 하천에 쓰레기를 버리거나, 물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.
- ☞ 낚시 등산시에는 도시락을 이용하고, 자기쓰레기는 되가져 옵시다.
- ☞ 농약은 알맞게 뿌리고, 페비닐과 빈병은 반드시 거둬들입니다.
- ☞ 풀 한포기, 새한마리도 우리의 가족처럼 아끼며 보호합시다.

— 환 경 부 —

■ 편집 및 제작 : 환경부 기획관리실
(전산통계담당관실)
☎ 504-9235